의 안 번 호	제 호	의결사항
의 결 연 월 일	2018. . . (제 회)	

지 방 공 무 원 임 용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18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 신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업무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임용일자 소급 요건 개선(안 제5조 및 제6조)

1)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 시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
2)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퇴직후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등 추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

나.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근거 마련(제21조의4 제5항 신설)

1)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 별도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. 다만, 한시임기제 및 정책결정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 제외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　　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8. 5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 중 “본다.”를 “보며, 임용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.”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임용시기의 특례) 공무원의 임용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한다.

1.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사망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

   가. 재직 중 사망한 경우 : 사망일의 전날

   나. 퇴직 후 사망한 경우 : 퇴직일의 전날

2.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: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

3.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: 사망일의 전날

제6조제1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재직 중 사망한 경우 : 사망일의 전날

나. 퇴직 후 사망한 경우 : 퇴직일의 전날

제21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(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)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내(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기간을 말한다)에서 일정한 기간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임용 시기) ① 공무원은 임용장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용장에 적힌 날짜까지 임용장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용장을 실제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.	제5조(임용 시기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 보며, 임용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임용일자 소급의 금지) 공무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날짜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.	제6조(임용시기의 특례) 공무원의 임용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한다.
1.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	1.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사망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
	가. 재직 중 사망한 경우 : 사망일의 전날
	나. 퇴직 후 사망한 경우 : 퇴직일의 전날
2.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직권면직할 때 휴직기간이 끝난 날이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공무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	2.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: 휴

그 임용날짜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.	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.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: 사망일의 전날
1.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	1. ----------
<신 설>	가. 재직 중 사망한 경우 : 사망일의 전날
<신 설>	나. 퇴직 후 사망한 경우 : 퇴직일의 전날
2.·3. (생 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제21조의4(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) ① ~ ④ (생 략)	제21조의4(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(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)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내(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

	임기제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기간을 말한다)에서 일정한 기간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지방인사제도과	
연 락 처	02-2100-3874